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설치〉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95호)

2025. 11.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안)	1
II. 검토의견	3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허성무 · 윤준병 · 임오경 · 윤종균 · 권칠승 · 송재봉
· 조인철 · 이강일 · 조계원 · 최혁진 의원(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23.

다. 회 부 일 : 2025. 9. 24.

※ 의안번호 : 1319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8월에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하여 총 39개 기관이 1,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ODA 사업예산규모는 6조 343억원으로 2026년 예산안의 약 1%에 해당함.

그러나 ODA 관련 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집행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사업 및 예산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ODA 관련 사업 간 유사·중복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워 ODA 관련 사업의 통합적

인 심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안건을 전담하여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6조의4(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① <u>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둔다.</u> 1. <u>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u> 2. <u>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u> 3. <u>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건의 심사</u> ② <u>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81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u>

현행	개정안
	③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 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 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④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특별위 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 서 선거한다. ⑥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현행	개정안
	<u>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 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 다.</u> <u>⑧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국제개발협력은 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적 주체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수원국의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 ODA(Grant, 증여)와 유상 ODA(Concessional Loan, 양허성 차관)로 구분됨.

우리나라는 유상 ODA와 무상 ODA를 각각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유상 ODA의 시행기관은 수출입은행(EDCF) 1개 기관이며, 무상 ODA의 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포함한 46개 기관임¹⁾.

1)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Ⅲ, 388~391p(국회예산정책처, 2025. 7.)

이에 따라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안들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나누어 심사가 되고 있음.

개정안은 ODA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안의 통합적 심사를 통해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① ODA 사업의 예산 규모(2026년 기준 전체 예산의 약 1%),
② 행정부에서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 ③ 최근 유·무상 ODA 간 연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동일한 수원국에 대하여 같은 분야에서 수행 중인 ODA 사업들을 결합하여 패키지화하는 ‘다부처 협업 ODA’ 사업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²⁾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①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사안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국회법 상 상임위원회 소관주의 원칙³⁾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국회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오고 있다는 점⁴⁾, ② 상설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예산, 공간 및 인력 소요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

2)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Ⅲ, 432~435p(국회예산정책처, 2025. 7.)

3) 「국회법」 제37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하는 부처 및 기관을 나열하고 있음.

4) 현재도 다수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2026.5.29.),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2025.12.31.) 등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